



제1부 금융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함께 알아보는 금융지원



- Q** 2009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 A**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지난해는 업체당 평균 3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연간 최대 45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A** 특허 기술이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기계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Q** 지난 95년에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생산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입니다.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도입, 기계구입, 사업장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 A**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 자금은 시설자금은 지원되지 않고,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도로만 지원됩니다.

Q 2009년부터 컴퓨터 프레스와 판금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2013년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여 전기 온풍기 업종 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술발전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추가 시 '사업전환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Q 지난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자금은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 사업성·기술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개발기술사업화·장기시설투자 지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책자금은 신청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총 대출잔액 기준으로 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이내로 대출한도 관리를 합니다. 또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일 기준 동일기업당 지원횟수를 최근 3년 이내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및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 총 지원횟수에 따른 중복지원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용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이 이루어지며,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용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1 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8
1-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
1-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20
1-4 신성장기반자금	22
1-5 재도약지원자금	25
1-6 긴급경영안정자금	28
1-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0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자금지원 공통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 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용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용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용자한도

-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2%p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업체 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 향상)은 1년간 0.3%p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단, 브랜드K인증기업은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 기준 50% 완화

-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 수납 기준) 범위 이내 지원

* 투융자복합금융 및 고정금리 자금, 금리우대 자금, 연체, 휴·폐업 업체 등은 이자환급 불가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융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자금상담→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신청서 제출 포함)이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온라인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원금을 기업에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와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사항 등 멘토링 지원

용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용자 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 ④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으로 용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⑥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⑦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 수출항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⑧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⑩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 제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적용 제외)

⑪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⑫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재도약 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 ⑬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은 산정 예외
 - 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은 횡수산정 예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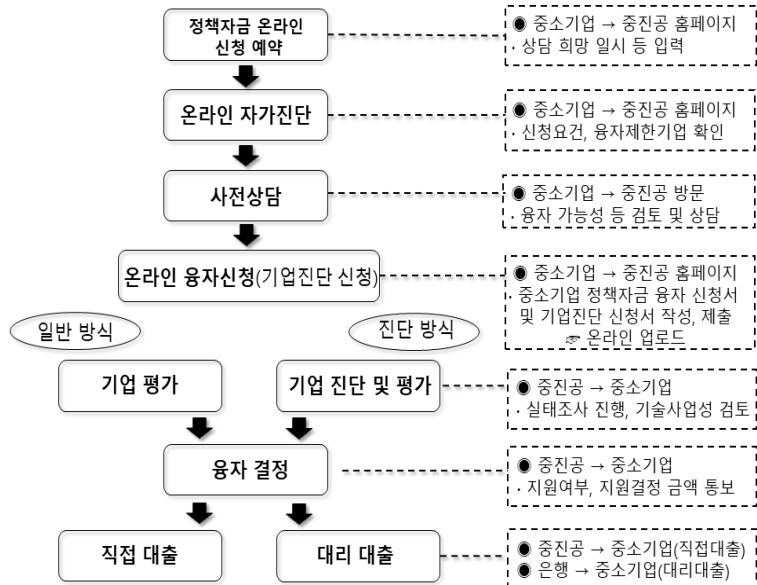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5조 4,10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2,5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4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자금(5,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7,700억원),
 - 재도약지원자금(2,5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5,00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 2015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 A**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지난해는 업체당 평균 2.2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연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A** 특허 기술이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기계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Q** 지난 95년에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생산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입니다.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도입, 기계구입, 사업장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알려줘요!



-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 A**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수출제품 사업화를 위한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도로 지원됩니다.
- Q** 2009년부터 컴퓨터 프레스와 판금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2013년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여 전기운동기 업종 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추가 시 '사업전환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Q** 지난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책 자금은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 사업성·기술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개발기술사업화·시설투자지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총 대출잔액 기준으로 수도권 60억원, 비수도권 70억원 이내로 대출한도 관리를 합니다. 또한 동일기업당 지원횟수를 최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및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 총 지원금액을 1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용자를 받을 수 있나요?
-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이 이루어지며,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용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융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융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 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진공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진공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1-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업력 7년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비대면분야 창업자금은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응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예정) 또는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

〈비대면분야창업자금〉

- 창업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비대면 분야 영위 기업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미래 성과 공유제 도입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 ①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NET, 전력신기술,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

- (미래기술육성)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고성장축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종업원 10명 이상 (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지방소재기업 15%)
-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 (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응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투자자금은 혁신창업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만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차감(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투자자금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 10년 이내(거치가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3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제조업종 기업당 2억원 이내, 그 외 업종 기업당 1억원 이내
-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 기업당 10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 대출 및 멘토링 실시(융자상환금 조정형)

신청·접수

- * 용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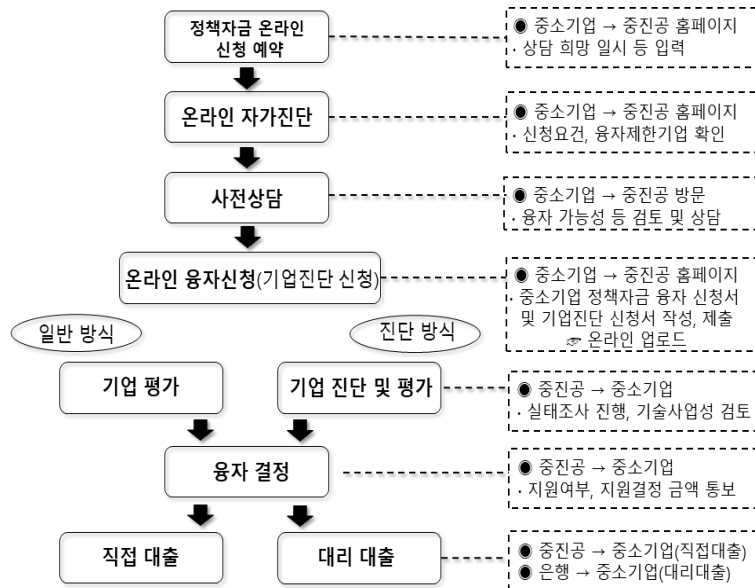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2조 2,500억원

* 2020년 11월말 신청기업 12,914개사 중 10,91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5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융자에 투자요소를 포함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포함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대상

-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방식

- 대출방식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증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증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5%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스케일업금융)

- 대출기간 : 3년 이내(회사채 종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금리, 한도 차등)
- 융자방식 : 중소기업 발행한 회사채를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유통화 후 자금지원
 - * 융자조건, 신청·접수, 처리절차 등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 참고

대출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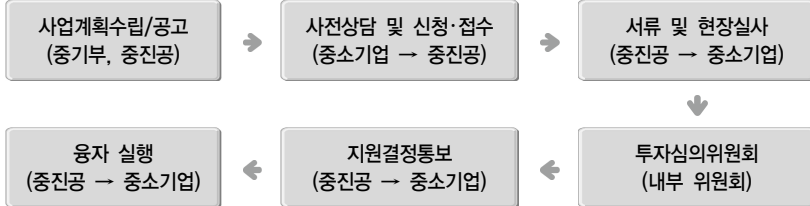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1,400억원

* '20년 지원현황 : 성장공유형대출 10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0.1억원
스케일업금융 9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7.7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 인수 합병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

1-4 신성장기반자금

업력 7년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대상

- 혁신성장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 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 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기업,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③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응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스마트공장, 공정혁신 및 자동화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응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응자 가능(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 자금과 별도 응자 불가)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단,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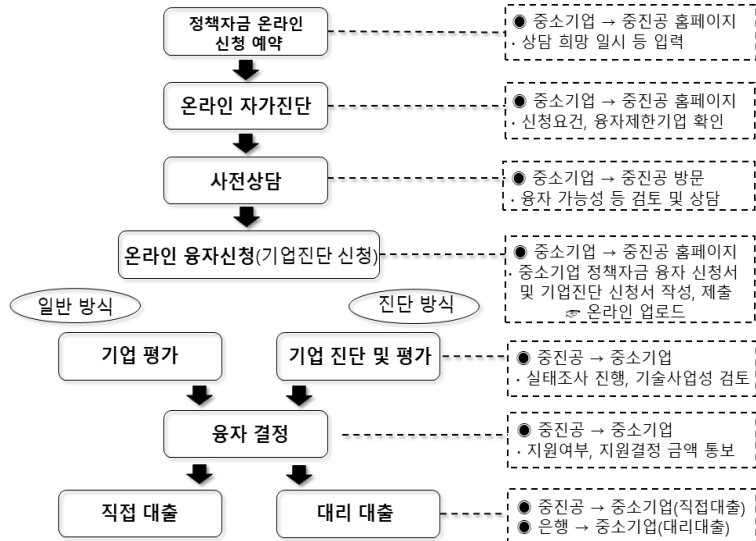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신성장기반자금 : 1조 7,700억원

* 2020년 11월말 신청기업 2,765개사 중 2,447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6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5

재도약지원자금

중소기업의 재도약 성공을 지원

신사업개척과 무역피해 극복, 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정상화를 도모하고, 재창업을 통한 재기지원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약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 분	지 원 요 건
사업 전환 자금	①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수 5인 이상으로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 개선 자금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종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 종결 후 3년 내 기업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⑥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물납법인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재창업 자금	재창업 예정이거나 재창업 후 7년 미만인 기업 중 ① 사업실패로 인한 저신용상태 혹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면책, 회생, 신용회복,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④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실패 개인기업의 대표이거나 실패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폐업한 실패기업이 매출실적 보유(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
- ▶ (재창업)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한 기업인 등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사업 전환 자금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 무역조정자금 - 2% 고정금리
구조 개선 자금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 2% 고정금리, 운전(5년, 거치 2년 포함) 및 시설자금 (10년, 거치 4년 포함) 지원
재창업 자금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사업전환자금 : M&A용도의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 구조개선자금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 따른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 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
- (초기재창업자) 재창업준비의 충실성, 재기노력도 등을 심의

제출서류

- (공통) 융자신청서
-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 (재창업) 폐업사실증명원

처리절차

- 사업전환자금

전환계획접수

계획심사·승인

자금신청

자금심사·결정

- 구조개선자금

신청접수

자금심사·결정

자금대출

● 재창업자금

신청접수

성실경영평가

자금심사·결정

자금대출

* 초기재창업자(예비 및 업력 1년미만)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로 처리

지원규모

● 재도약지원자금 : 2,500억원

- 사업전환자금 1,000억원, 구조개선자금 500억원, 재창업자금 1,000억원

* '20년 지원현황 : 재도약자금 3,10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알려줘요!



Q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과 사업전환자금 신청은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사업전환자금은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전환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창업예정자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데 지원이 되나요?

A

네, 예비재창업자도 신청은 가능하며 심의위원회의 평가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출은 사업자등록 후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경영위기 기업 대상 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지원을 위해, 중진공이 채권은행과 협업하여 '기업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자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워크아웃제도보다 선제적이고 기업중심적인 구조개선·재도약을 지원하는 '21년 신규사업입니다.

1-6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 지원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용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 재해피해 기업의 경우, 용자제한기업 ①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용자제한기업 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 *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 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코로나19 피해) ②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 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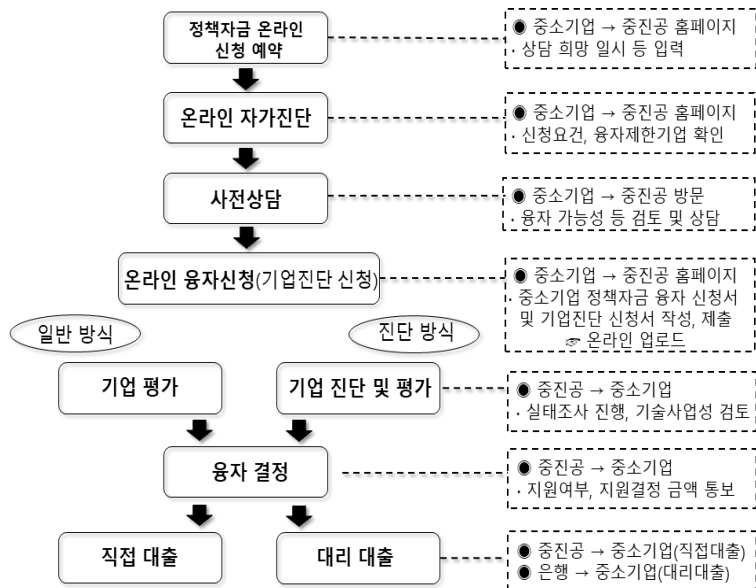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긴급경영안정자금 : 5,000억원

* 2020년 11월말 신청기업 8,045개사 중 7,53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7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글로벌 기업화 촉진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대상

-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진출 스타트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 **온라인 수출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및 중진공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 **브랜드K 선정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B2C 제조업체가 생산한 대한민국 소재 제품으로 선정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일정 수준의 수출실적**이 발생한 기업

- (수출글로벌기업화) 수출 유망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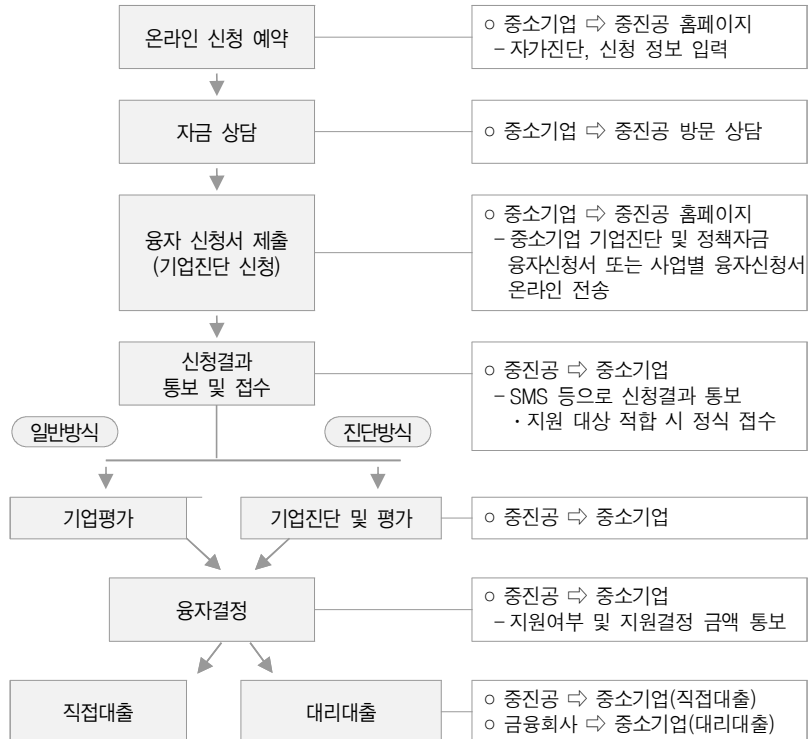
지원내용

- **융자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해외진출 스타트업은 5천만원 이내
 - * 브랜드K 선정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5,000억원

* '20년 지원현황 : 1,490개사 신청기업 중 1,387개사 선정지원(업체당 평균지원금액 2.2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제 2 장

신용보증 지원

2-1 신용보증	34
2-2 기술보증기금	38
2-3 지역신용보증재단	41
2-4 매출채권보험	44

2-1 신용보증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보증종류	주요내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용 등
제2금융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농·수협,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상거래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보다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지원가능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 고성장 혁신기업 - 혁신아이콘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	150억원
■ 시설자금	100억원
■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70억원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납세사실증명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처리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및 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및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보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기업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및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지원규모

- 보증잔액 57.5조원으로 운용예정

* '20년 지원현황(11월말) : 55.1조원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고용창출기업 보증	·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특별보증
	시설자금특례보증	· 사업장 신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보증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거래,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SMART융합보증	·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도입 및 생산을 위한 자금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화된 보증 상품 지원**
	기타	· 신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등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고용창출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우대보증 등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2-2

기술보증기금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 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 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용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용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 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신청·접수

- '21.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 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21년 기술보증 잔액 26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2조원 별도)
* '20년 11월말 현재 기술보증 잔액 : 25.3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3조원 제외)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기보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

기보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2-3 지역신용보증재단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채무관계자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8억원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처리절차

보증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기업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분(기업대표자 상담 원칙)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 대표자 주민등록표등·초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및 거주주택)
- 금융거래확인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등
-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및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

- 25.3조원 보증공급(보증잔액 45.9조원)

* 햇살론사업자 포함(공급 0.3조원, 잔액 0.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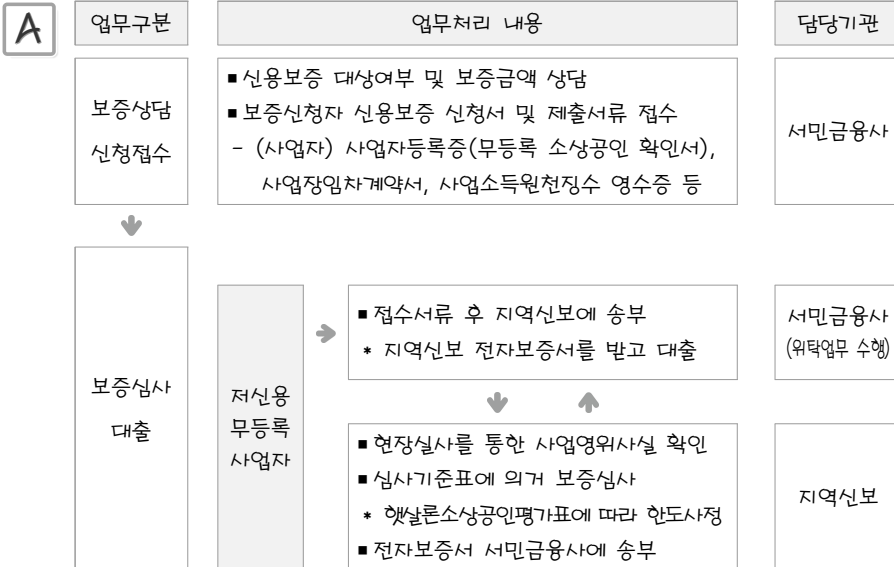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www.koreg.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햇살론 신용보증의 지원절차는?



2-4

매출채권보험

납품대금 폐일 염려 없는 거래안전망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어음보험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지원 제한 사항

-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 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결제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보험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어음보험 포함)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상품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 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B2B PLUS*보험	8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B2B*보험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내용

-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구매자확정, 인수여부 등 결정

- 제출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관련자료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절차	보험가입절차	세 부 내 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지원규모 ● 보험인수 20조원으로 운용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매출채권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은?

A	구 분	매출채권보험(신용보험)	신용보증
	특 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완을 통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성격	자기를 위하여 계약자가 체결	채권자를 위한 피보증인이 체결
	수수료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 A**
-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 보험금 청구시기
 - 상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 A**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용어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